

시론



장영수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임성근 前 판사 탄핵소추 ‘각하’의 의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10년의 판사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성근 前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퇴직한 임성근 前 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탄핵소추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린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임성근 前 판사가 후배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은 위헌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판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탄핵소추가 각하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법부는 무풍지대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노무현 前 대통령과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해 2번 있었고, 그 중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결정까지 내려져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던 것에 비하면, 판사 탄핵소추가 그동안 없었던 점도, 그리고 임성근 前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각하되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을 제대로 들여

다보면, 그렇게 단수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동안 판사 탄핵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비리가 문제된 판사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본인의 자발적 판단이건, 아니면 법원 내부에서의 압력 때문이건 탄핵소추의 대상이 사직한 이후에 탄핵소추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발의조차 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물론 국회 내에서 법관 탄핵이 논의된 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문제될 소지 자체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임성근 前 판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임성근 전 판사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것은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20년 2월 1심 재판에서 당시 현직에 있던 임성근 판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여당은 탄핵소추의 근거로 1심 판결문에서 임성근 前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을 했던 점을 들고 있으나, 1심 판결에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 관여의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로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20년 5월 당시 임성근 판사가 중대한 수술 후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을 신청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사직을 불허했던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하여 커다란 우려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당시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국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주도에 의해, 그것도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2021년 2월 4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임 판사는 10년의 법관 임기가 만료되고,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월 28일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국회에서 임성근 前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미 퇴직이 예정된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형사처벌과 달리-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에 그치는 탄핵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한 헌법적 기준의 확립을 위해 퇴직한 판사에 대해서도 심판을 진행하여 탄핵결정을 내림으로써 재판 관여의 위헌성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만일 임성근 前 판사의 재판 관여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면, 헌법재판소도 본안 심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비록 3인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지만-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적법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1심 법원에서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 관여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후배 판사의 재판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조언을 한 정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석부장판사의 위치에서 한 것으로서 재판 관여로 인정된다면 위헌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미한 것까지 모두 유죄로, 혹은 탄핵결정의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의 독립을 위해 필수적인 법관의 신분보장이 오히려 무력화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도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성근 前 판사의 경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안판단에 들어갈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 1심 법원에서 임성근 前 판사의 재판 관여를 위헌적인 것으로 지적하면서도 무죄로 판결한 것도 그 관여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에 들어가서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면, 여당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위헌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결정과 같은 논리라 하더라도 판사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했을까?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판사 탄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세웠으니 만족한다고 했을까?